

2023년 경기북부 공공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202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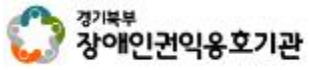
2023년 경기북부 공공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2023. 12.



목 차

○ 2023년 경기북부 공공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1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2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5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7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84



2023년 경기북부 공공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2023년 경기북부 공공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경기북부장래인권익용호기관]

- 복도(통로) 보행을 위한 헨드레일(손잡이) 미설치 77.55%
-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책자,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및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공연장 각 4.35%
- 시각장애인의 무인발급기 이용을 위한 편의제공이 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0%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문화원 0%
- 장애인 화장실은 여전히 참고로 사용되고 있다!!!

1. 조사 배경 및 목적

1. 조사 배경

문화·여가 활동은 장애·비장애를 떠나서 모두가 그 활동을 통한 즐거움을 평등하게 누리고 싶어한다. 이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욕구로 사회참여와 통합의 기회가 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동기이며, 이는 곧 자아실현의 기반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¹⁾에 따르면 장애인의 78.6%가 혼자 외출이 가능하다고 조사되었다. 그러나 집 밖 활동 시 불편함을 느낀 응답자는 49.0%이고, 이 불편함을 느끼는 주된 이유가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수는 40.8%로서 불편함의 이유 중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 또한 51.1%(2017 장애인 실태조사 50.7%)의 응답자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 받아야 할 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또 다른 의미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생활수준과 환경에 따라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은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삶의 질을 고려할 때 물질적인 측면만이 아닌 문화적·정신적 측면을 동시에 바라보게 되듯, 공공문화시설의 시설 접근성을 중심으로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하는 문화적 측면의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조사 목적

- 장애인의 공공문화시설 접근성 및 이용 시, 편의제공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
- 공공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를 위한 법 규정 안내 및 가이드 제시
- 지역사회 장애인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 시설의 환경 조성

1)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I. 문제인식 (도입)

[공공문화시설, 장애예술인 이용 접근성은 '저조']

(발췌. 월페이어뉴스 2022.02.28.)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필요한 문화시설 편의시설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복잡한 대관 절차, 비싼 대관 비용으로 공공 문화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요약 -

장애예술인을 위한 시설 접근성, 공공 문화시설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예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을 조사한 결과, 국공립 문화시설의 편의시설 중 '휠체어 등이 출입문 통과가 가능한 턱', '건물 내 복도의 폭과 경사가 휠체어로 이동 가능'이 각각 82.8로 가장 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설 내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자동문 설치' 48.8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열람석·무대설치율'은 42.4점으로 조사돼, 장애예술인들이 창작과 발표 활동에 필요한 시설 접근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관 절차, 비용 등으로 공공 문화시설 이용이 힘든 것.

- 요약 -

하지만 공공 문화시설 이용 시 복잡한 대관 절차(69.1점), 높은 대관 경쟁률(67.8점), 비싼 대관 비용(64.3점)등으로 공공 문화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뒤이어 외부에서 접근 어려움(59.4점), 대기실·준비공간으로 이동 어려움(59.2점), 공연·전시·행사 관련 정보 미제공(57.7점) 등이 뒤를 이었다.

- 이하 생략 -

[대전시 문화예술 공공시설... 장애인 인프라 미흡]

(발췌. 대전일보 2023.06.11.)

대전시 산하 공공 문화예술 기관들의 장애인을 위한 관람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기관들은 ‘관련법 이후 건물 준공’, ‘방문 장애인 소수’ 등으로 해명하고 있어, 향후 이들 기관들의 장애인 편의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또 자치단체의 법적 의무사항인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장애인들의 참여를 유도,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시 문화예술 기관들은 지난해 9월부터 장애인들에게 음성 안내, 공연 자막 해설 등을 제공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무장애)의 버전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부 공연·전시에만 적용되고 있을뿐더러 장애인 편의시설 역시 일부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0000000의 입구 앞에는 회색빛 점자블록이 한 줄로 설치돼 있다.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법에 따르면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유도과 안전을 위한 설치물로 눈에 잘 띄는 황색이어야 한다. 바닥이 황색일 경우에만 회색, 검은색, 희색으로만 대체할 수 있다. 예외에 속하지 않는 0000000의 경우 황색 점자블록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 요약 -

공연장과 0000미술관에서도 불편은 이어졌다.

시각장애인의 공연 및 전시 이해를 돕는 점자 리플릿과 도록이 전무했다. 예산 등을 이유로 공연의 순서와 내용을 안내하는 리플릿은 전부 점자가 없는 종으로 제작되고 있다. 게다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해설 등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이 찾는 경우가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 이하 생략 -

III. 공공문화시설 실태조사 조사원 사전교육

- 일 시 : 2023.10.23.(월) 10:30 ~ 13:00
- 장 소 : 경기도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305호 (양주시 고삼로43번길 28)
- 참여자 : 조사원 9명
<조사원 선정기준 : 실태조사 유경험자인 장애인>
- 교육내용: 장애인관련법,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안내, 체크리스트 작성법 등
- 교육자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정책팀장 백주현
- 사진



IV. 조사 방법

1. 조사기관 선정 및 조사 항목

이번 조사는 경기북부지역 공공문화시설 81곳²⁾ 중 지난 2019년에 실시된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공공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실태 조사’ 당시 선정된 50곳에서 공사, 운영 중단 등의 이유로 조사가 어려운 곳을 일부 제외하고, 신·증축된 시설 중 수용인원이 가장 큰 시설을 포함하여 50곳으로 다시 구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등 편의법’이라 한다)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문화 활동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의 제공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2023년 10월 23일 ~ 11월 8일까지 실시하였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의 규정에 따라 매개시설(장애인 주차구역, 경사로, 주 출입문 등), 내부시설(복도, 계단,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 안내시설(촉지도, 점자블록 등) 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따른 문화시설 내 실제 장애인의 이용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기관별 65~73개의 세부 조사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2) KOSIS 국가통계포털_공공문화체육시설_문화시설 (2005~2022)

2. 체크리스트 작성

본 조사를 위한 체크리스트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2018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자료와 본 기관의 2018년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이용 실태조사 자료를 참고로 하였으며, 앞선 조사의 비교를 위해 선행 되었던 2019년 경기북부 공공문화시설 장애인 편의 실태조사의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 편의법에 규정된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첫째,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조사항목을 포함하였다. 법에 따라 접근로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설치 현황 및 적정 설치 현황을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접근로, 주 출입구 높이 차이제거, 출입구(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승강기,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시설, 청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시설, 피난 및 대피시설, 점자블록 등이 포함이 된다.

둘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조사항목을 구성하였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편의제공의 범위를 편의시설 설치 및 정보제공, 인적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장애인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장애인에게 필요한 수어통역 및 인적지원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 등을 조사하였다.

3. 조사 방법

본 실태조사의 조사 방법은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하였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조사 대상 기관에 공문발송을 통해 사전에 실태조사의 목적을 밝히고 조사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조사원은 현장교육을 이수한 후 조사원 명찰을 패용하고 조사현장에 방문하여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50개 공공문화시설을 방문 조사 하였고, 50곳 모두 조사가 완료 되었다.

<표 IV-1> 경기북부 10개 시·군 조사대상 (지역별 분포)

구분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합계
조사 대상	2	11	5	5	5	6	3	2	5	6	50

<표 IV-2> 경기북부 10개 시·군 조사대상 (형태구분별)

연번	구분	기관명	지역	비고
1	박물관 / 미술관 (16개)	고양가와지법씨박물관	고양시	-
2		고양어린이박물관	고양시	-
3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고양시	-
4		국립여성사전시관	고양시	-
5		고구려대장간마을	구리시	-
6		남양주 실학박물관	남양주시	-
7		남양주시립박물관	남양주시	-
8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동두천시	-
9		자유수호박물관	동두천시	-
10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	양주시	-
11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양주시	-
12		양주회암사지박물관	양주시	-
13		전곡선사박물관	연천군	-
14		산림박물관	포천시	-
15		포천 역사문화관	포천시	-
16		국립수목원산림박물관	포천시	-
17	공연장 (24개)	가평문화예술회관	가평군	-
18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꽃메야외극장	고양시	-
19		고양어울림누리별모래극장	고양시	-
20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	고양시	-
21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하이든홀>	고양시	-
22		고양토당청소년수련관	고양시	-
23		고양시문예회관	고양시	-
24		구리아트홀 유채꽃소극장/코스모스대극장	구리시	-
25		구리시청소년수련관 공연장	구리시	-
26		구리시행정복지센터 공연장	구리시	-
27		다산아트홀	남양주시	-
28		북한강야외공연장	남양주시	-
29		동두천시민회관	동두천시	-
30		두드림뮤직센터	동두천시	-
31		양주시 야외공연장(별산대놀이마당)	양주시	-
32		양주문화예술회관	양주시	-
33		연천수레울아트홀 대공연장/소공연장	연천군	-
34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공연장/소공연장	의정부시	-
35		문산행복센터 대공연장/소공연장	파주시	-
36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소공연장	파주시	-
37		운정행복센터 공연장/다목적홀	파주시	-
38		솔가람아트홀	파주시	-
39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소극장	포천시	-
40		아트밸리 산마루 공연장	포천시	-
41	문화원 (10개)	가평문화원	가평군	-
42		고양문화원	고양시	-
43		구리문화원	구리시	-
44		남양주문화원	남양주시	-
45		동두천문화원	동두천시	-
46		양주문화원	양주시	-
47		연천문화원	연천군	-
48		의정부문화원	의정부시	-
49		파주문화원	파주시	-
50		포천문화원	포천시	-

V. 편의시설 및 이용 실태조사 결과

1. 공통사항

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위:%)

문항	2019년		2023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가-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92.00	8.00	96.00	4.00
가-2. 장애인 주차구역이 다른 일반 주차구역보다 면적이 넓습니다.	89.36	10.64	83.33	16.67
가-3. 장애인 주차구역은 건물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82.98	17.02	89.58	10.42
가-4. 장애인 주차장 바닥의 색상이 다르고 휠체어 그림이 있으며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38.30	61.70	44.90	55.10
가-4-1. 4번 문항에서 표시된 것은 무엇인가요?(모두 골라주세요) (①바닥의 색상이 다르다 ②휠체어 그림이 있다 ③안내표지판이 있다)	<그래프 공통-가-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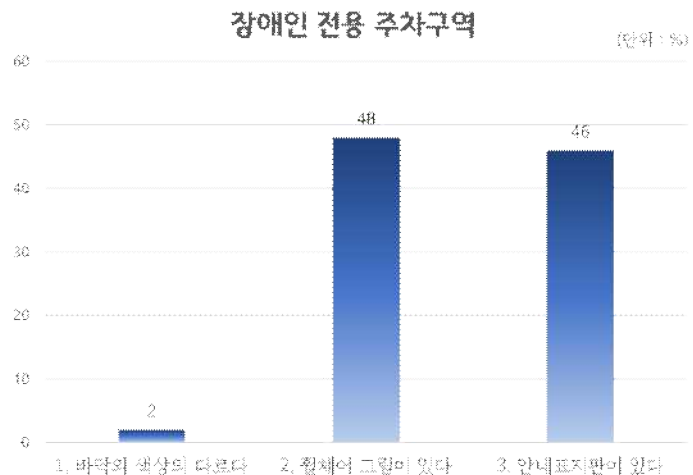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조사한 결과이다.

장애인등 편의법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구역의 수는 각 2% ~ 4% 범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차구역의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그 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평행 주차인 경우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을 주차구역의 규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가 차에서 내려 휠체어에 올라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을 고려하여 일반주차구역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곳은 96%, 장애인 주차구역의 면적과 건물 출입구와의 거리가 적절한 곳은 83.33%~89.58%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차장의 바닥 색상과 휠체어 그림, 안내표지판의 기준을 모두 갖춘 곳은 22개 기관으로 나타났다으며, 바닥의 색상이 다른 곳은 2%, 휠체어 그림이 있는 곳은 48%, 안내표지판이 있는 곳은 46%로 조사되었다. 2019년 조사결과와 대비하여 보면 신축 되어진 건물의 주차공간이 적은 곳이 생긴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것으로 확인된다.

<그래프 공통-가-1> 공통사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조사 문항 가-4-1의 결과





바닥의 색상이 같고 안내표지판이 없는 문화원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사용불가능한 공연장



바닥의 색상이 같고 각종 설치·적재물이 있는 문화원



장애인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 주차장이 아닌 건물 입구 경사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회관

나. 경사로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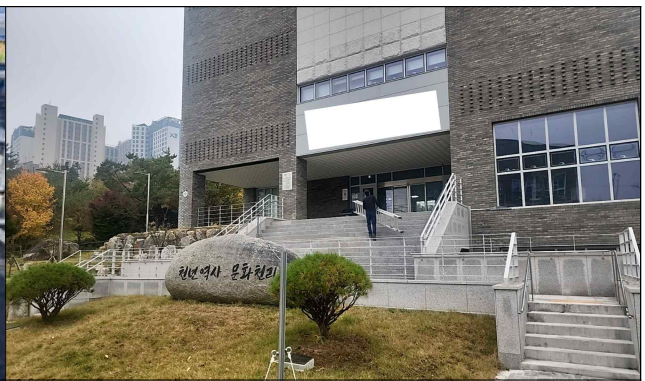
문 항	2019년		2023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나-1. 경사로가 필요합니다. (단차가 2cm 이하인 경우 경사로 필요 없음)	75.00	25.00	66.00	34.00
나-2. 경사로가 필요한 경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91.67	8.33	93.94	6.06
나-3. 경사로의 기울기는 휠체어로 이동하기에 적합합니다.(스쿠터등 보장구 포함)	94.12	5.88	87.88	12.12
나-4. 경사로의 폭은 휠체어로 이동하기에 적합합니다.	97.14	2.86	90.91	9.09
나-5. 경사로 바닥은 미끄럽지 않습니다.	97.14	2.86	93.94	6.06
나-6. 경사로는 고정식입니다.	100.00	0.00	90.91	9.09
나-7. 경사로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70.59	29.41	75.00	25.00

경사로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장애인등 편의법은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 유효폭을 1.2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아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m x 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하며,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고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경사로의 설치와 기준은 87.88%~93.94%로 나타났으며, 2019년 조사 결과 91.67%~100%보다 조금 낮아진 수치를 보인다. 이는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했었던 곳의 변화 수치가 적용된 것으로서, 대부분 임시적 조치를 했던 경우인데 다시 설치가 되며 적합하지 못하게 설치된 상황이다. 또한, 건물 출입을 위한 경사로가 필요함에도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곳이 6.06%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건물 출입이 불가능한 곳도 있었으며, 이동을 위해 설치된 경사로에 장애물이 있어 이용이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



자전거가 주차되어 경사로 이동이 불가능한 문화원



경사로는 없이 계단만 있는 문화원

다. 안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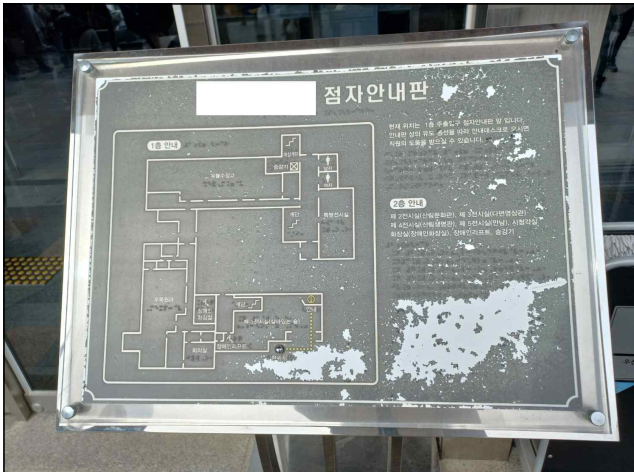
(단위:%)

문항	2019년		2023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다-1. 건물 앞에 안내를 위한 축지도(점자지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4.90	55.10	36.73	62.27
다-2. 축지도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52.27	47.73	88.89	11.11
다-3. 건물에 알아보기 쉬운 그림(사진)으로 된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41.67	58.33	44.90	5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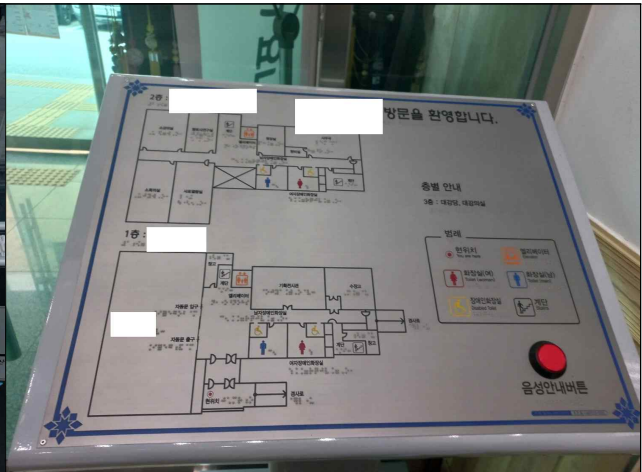
건물 앞 축지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62.27%로 미흡하게 나타났으며 축지도가 있어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이 11.11%로 조사되었다. 다만, 2019년 조사 때 보다 축지도의 설치 위치에 대한 개선이 많이 이루어진 것도 알 수 있었다.

또한, 축지도가 있어도,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된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44.90%로 절반 이상이 보기 쉽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 조사로 확인된 내용으로는 축지도가 있어도 관리가 되지 않아 부식이 심한 곳이 있었으며, 음성안내버튼이 고장나거나 눌러도 안내가 되지 않는 곳이 다수 발견되었다.



촉지도가 관리 되지 않아 부식이 많이 된 박물관



음성안내가 고장 난 문화원

라. 주출입구

(단위:%)

문항	2019년		2023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라-1. 주 출입구에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62.00	38.00	68.00	32.00
라-1-1. 점자유도블록은 부서짐 없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서짐, 연결 끊김 등이 없는지 확인)	76.32	23.68	82.35	17.65
라-2. 출입문의 폭은 휠체어가 통과하기에 적합합니다. (최소 90cm 이상)	93.48	6.52	97.92	2.08
라-2-1. 불편하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폭이 너무 좁다, 턱이 있다, 회전문 외에 다른 문이 없다 등)				
라-2-1 답변. 폭이 너무 좁다, 경사로에서 출입구로 이동폭이 좁다, 자동문이나 버튼을 눌러야만 열린다. 수동문만 있다.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주 출입구의 점자유도블록 설치는 82%로, 이 가운데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82.35%로 나타났다.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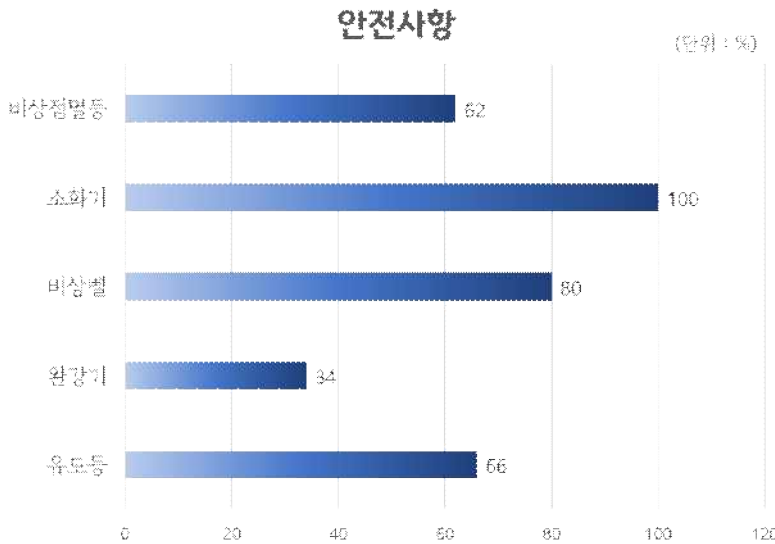
점자유도블록 위로 카펫이 깔려 있는 공연장

마. 안전사항

(단위:%)

문항	2019년		2023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마-1. 화재 등 비상시 장애인의 비상대피를 위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	27.66	72.34	40.43	59.57
마-2. 비상사태를 위해 설치된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①비상점멸등 ②소화기 ③비상벨 ④완강기 ⑤유도등)	<그래프 공통-마-1> 참조			

<그래프 공통-마-1> 공통사항 안전사항 조사 문항 마-2의 결과



비상시 장애인을 위한 비상 대피 매뉴얼이 있는 곳은 40.43%로 조사되어 화재 등 비상시 장애인의 안전이 여전히 매우 취약하게 나타났다. 해당 조사기관 50곳 중 비상점멸등, 소화기, 비상벨, 완강기, 유도등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곳은 19곳이며, 비상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62%, 소화기 설치는 100%, 비상벨 80%, 완강기 34%, 유도등 66%로 비상사태를 위해 설치되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미흡한 것은 완강기로 조사되었다.

바. 계단

(단위:%)

문항	2019년		2023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바-1. 계단에 손잡이와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76.09	23.91	87.23	12.77
바-2.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에 점자유도블록이 있습니다.	60.87	39.13	54.35	45.65
바-3. 계단 코에는 미끄럼방지처리가 되어있습니다.	76.09	23.91	52.17	47.83
바-4. 계단 손잡이에 점자표시가 있습니다.	67.57	32.43	54.35	45.65

내부 계단의 조사 결과이다. 장애인등 편의법에 의하면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

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계단의 손잡이와 난간, 점자유도블록의 설치, 손잡이의 점자표시 등 적합한 곳이 52.17~87.23%로 조사되었고 계단 시작과 끝 지점에 있어야 할 점형 유도 블록의 설치는 54.35%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지난 2019년 조사때보다 계단 코의 미끄럼방지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곳과 손잡이에 점자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이 발견되어 수치의 변화가 큰폭으로 나타났다.



계단 코 미끄럼방지처리, 손잡이 점자표시,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미술관

계단 코 미끄럼방지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박물관

사. 복도 및 통로

(단위:%)

문항	2019년		2023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사-1. 복도 폭이 휠체어 두 대가 마주 보고 통행하기에 적합합니다. (1.2m 이상)	91.49	8.51	85.71	14.29
사-2. 복도나 통로 바닥표면이 미끄럽지 않습니다.	95.74	4.26	85.71	14.29
사-3. 복도 벽면에 붙잡고 이동할 수 있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6.17	63.83	22.45	77.55
사-4. 손잡이 위치는 적합합니다. (높이는 80~90cm로 설치)	47.22	52.78	90.91	9.09
사-5. 손잡이의 양 끝부분 및 굴절 부분에 방향이나 위치를 표시하는 점자표시가 있습니다.	42.86	57.14	100.00	-

복도 및 통로의 조사결과이다.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복도의 폭과 바닥표면은 85.71%로 나타났지만, 2019년 조사때와는 달리 복도에 손잡이가 설치 되지 않은곳이 많이 발견되었다. 벽면의 손잡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22.45%이며, 그나마 설치 되어 있는 곳의 손잡이 위치나 점자표시 등은 적절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손잡이가 없는 복도

아. 장애인용 화장실

(단위:%)

문 항	2019년		2023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1. 건물 내부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88.00	12.00	90.00	10.00
아-2. 장애인용 화장실이 실제로 이용 가능합니다. (예:창고·문을 잠가 놓은 경우 등 확인)	89.36	10.64	73.47	26.53
아-3.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80.85	19.15	79.59	20.41
아-4. 장애인용 화장실 내의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포함)	91.30	8.70	91.84	8.16
아-5. 세면대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는 점자표시가 있습니다.	25.53	74.47	14.58	85.42
아-6. 장애인 화장실 내부에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4.78	65.22	54.17	45.83
아-7. 장애인용 화장실 이용 시 불편한 점을 적어주세요. (화장지 깔이 위치, 바닥 미끄럼, 출입문 등)				
아-7 답변. 전동휠체어 이동 공간 부족, 청소도구함으로 이용, 폭이 좁아 불편함, 비상벨이 없고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너무 높아 불편함, 문이 수동이고 멈추지 않고 계속 닫힘 등				

장애인용 화장실의 조사결과이다.

건물 내부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는 곳은 90%이며 그 중 실제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73.47%로 조사되었다. 장애인등 편의법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41%가 구분되어있지 않았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세면대 수도꼭지의 점자표시는 14.58%로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2019년에 비해 응급상황을 위한 비상벨 설치는 상당수 개선 된 것으로 파악 되었다.

장애인 화장실은 언제나 사용 가능하도록 상시 개방되어 있고 활용이 가능하여야 하나 청소용품으로 가득하거나 창고로 활용하는 등 문제가 되어 왔던 사항들은 여전히 존재 하였다.

청소용품으로 가득한 문화원 장애인 화장실도 있었다.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도 관리인이나 직원들이 사용하는 용도로 변하여 각종 세면용품이나 카트수납장이 놓여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철문으로 화장실문이 되어 있어 실제로 출입이 어려운 곳도 있었다.

장애인등 편의법은 대변기·소변기·세면대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바(손잡이)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하였지만 좁은 공간으로 인해 휠체어 회전이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도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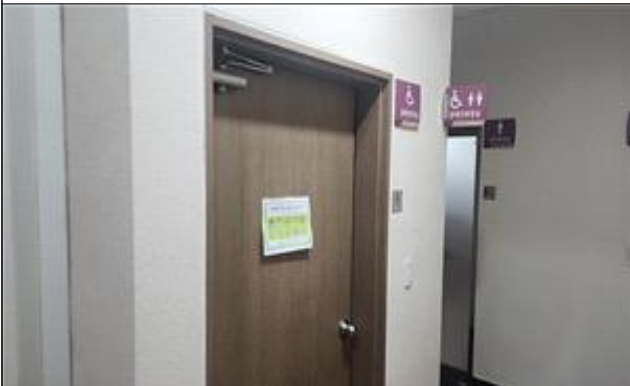
청소도구실로 사용되고 있는 공연장, 문화원



다른용도로 사용중이며, 회전도 어려운 공연장의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을 창고로 사용중인 문화원



장애인용화장실이 남녀 공용인 문화원



사생활 보호에 취약한 공연장

자. 엘리베이터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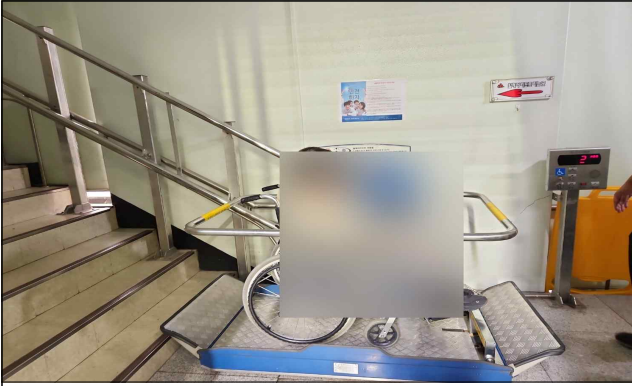
문 항	2019년		2023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자-1.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오 선택시 9번 문항으로 이동해주세요)	78.72	21.28	79.59	20.41
자-2. 엘리베이터에 장애인용 조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94.59	5.41	97.37	2.63
자-3. 엘리베이터에 점멸안내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57.58	42.42	44.44	55.56
자-4. 엘리베이터에 점자유도블록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 앞 설치 X, 조작판 아래쪽에 설치 O)	86.49	13.51	83.78	16.22
자-5. 엘리베이터 앞쪽에 대기공간은 휠체어 회전이 가능합니다.	100.00	0.00	100.00	0.00
자-6. 승강기 내부에서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합니다.	94.59	5.41	89.47	10.53
자-6-1. 휠체어 회전이 안된다면, 승강기 내부전면에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54.05	45.95	60.00	40.00
자-7. 승강기 내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64.86	35.14	78.95	21.05
자-8. 승강기 내부에 벽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4.59	5.41	92.11	7.89
자-9.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층으로 이동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1층 건물의 경우 '1층'이라고 표시해주세요)				
자-9 답변. 1층, 휠체어 리프트, 계단, 경사로 등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기의 전면에는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틈은 3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m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설치와 이용은 44.44%~100%로 나타났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은 78.95%로서 많은 변화 폭을 보였으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멸 안내등의 설치는 44.44%로 더욱 저조해진 수치를 보이고 있다. 조작판과 점자유도블록 사이에 화분을 둔 부적절한 경우도 조사되었고, 추락 등의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위험함이 존재하는 리프트를 층간 이동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 곳도 있었다.



휠체어 리프트로 이동해야 하는 공연장



점자유도블록과 조작판 사이에 화분을 둔 미술관

차.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단위:%)

문항	2019년		2023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차-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아니오 선택 시 아래 문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39.58	60.42	51.02	48.98
차-2. 임산부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아차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89.47	10.53	92.00	8.00
차-3. 임산부 휴게시설 내부에서 휠체어의 회전과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공간의 넓이 확인)	89.47	10.53	68.00	32.00
차-4. 수유실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야 함)	94.74	5.26	68.00	32.00
차-5. 기저귀 교환대, 세면대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높이, 휠체어 접근성 등)	89.47	10.53	56.00	44.00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아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이 있는 곳은 51.02%로 절반정도의 수치로 조사되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곳 중 92%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내부에서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한 곳이 68%로 나머지 32%는 휠체어가 들어가도 이용에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유실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곳은 68%이며, 기저귀 교환대와 세면대에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곳은 절반의 수치인 56%밖에 되지 않았다.

즉, 휠체어를 이용하여 휴게시설을 이용 가능한 곳은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 된다.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로 지정된 곳이 있으나 의자 외에는 아무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 의자만 있는 공연장

2. 박물관/미술관

가. 매표소

(단위:%)

문항	2019년		2023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가-1. 현장에서 티켓 구매 시 불편했던 점은 없습니다. (불편했던 점이 있었다면 가-1-1에 표시해주세요.)	80.00	20.00	90.91	9.09
가-1-1. 티켓구매 시 불편했던 점을 모두 써주세요.				
가-1-1. 답변. 무인발급기만 있고 턱이 높아 접근을 못한다. 매표소에 점자유도블록이 없다. 발급기가 너무 높ی 있다. 등				
가-2. 안내견 등 보조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보조견 출입금지, 전동 휠체어 사용거부 등)	73.33	26.67	100.00	0.00
가-3.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무인발급기 사용은 가능합니다. (높이 등)	0.00	100.00	50.00	50.00
가-4. 시각장애인이 무인발급기 사용 시, 점자표시와 음성안내가 제공됩니다.	0.00	100.00	0.00	100.00
가-5. 무인발급기 사용 시, 사용방법이 별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	-	0.00	100.00
가-6. 안내대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합니다. (높이가 적당해야 하고 하단에 공간 확보 필요)	38.46	61.54	50.00	50.00

박물관/미술관의 매표소 결과이다. 2019년 조사 시와 달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의 출입이 불가능한 곳이 한곳도 없을 정도로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9년 조사때에는 무인발급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서는 거의 모든 곳에 무인발급기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중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 가능한 곳은 50%로 정확히 절반의 수치가 나타나는 큰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무인발급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안내가 여전히 제공되고 있지 않았으며, 심지어 모두가 사용 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이 설명 되어야 하는데 모든 곳에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매표소의 높이는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여야 하나 50%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조사되었다.



매표방법이 무인발급기만 있으나
휠체어의 진입과 사용이 불가능한 박물관

나. 편의제공

(단위:%)

문항	2019년		2023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나-1. 확대경(돋보기)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18.75	81.25	6.25	93.75
나-2.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0.00	100.00	31.25	68.75
나-3.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해설 단말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31.25	68.75	37.50	62.50
나-4. 박물관/미술관 이용 시 원할 경우, 장애인을 위한 보조 인력이 지원됩니다.	75.00	25.00	81.25	18.75
나-5.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및 수어통역이 지원됩니다.	6.25	93.75	18.75	81.25
나-6.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12.50	87.50	18.75	81.25
나-7.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박물관/미술관 내 모든 공간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휴게공간포함)	81.25	18.75	93.33	6.67
나-8. 박물관/미술관 관람 시 불편한 점을 모두 적어주세요.				
나-8 답변. 편의시설이 되어있지 않다. 엘리베이 이용시 QR코드를 찍어야 올라갈 수 있다. 등				

박물관/미술관 이용 시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을 조사한 결과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을 위해 자료를 사전에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7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보조 인력 제공과 건물 내 접근은 81.25%와 93.33%로 조사되었고, 2019년 조사때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책자가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으나, 현재는 안내 책자가 제공 되는 곳이 31.25% 나타나며 변화를 보였다. 또한 음성안내와 해설 단말기가 있는 곳은 37.50%,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박물관과 미술관 관람 시 필요한 편의제공은 각 18.75%로 나타나 매우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3. 공연장

가. 매표소

(단위:%)

문항	2019년		2023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가-1. 현장에서 티켓 구매 시 불편했던 점은 없습니다. (불편했던 점이 있었다면 가-1-1에 표시해주세요)	82.35	17.65	57.89	42.11
가-1-1. 티켓구매 시 불편했던 점을 모두 써주세요.				
가-1-1 답변. 매표소가 너무 높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 이용불가, 인터넷예매만 가능 등				
가-2. 안내견 등 보조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보조견 출입금지, 전동휠체어 사용거부 등)	82.61	17.39	91.30	8.70
가-3.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무인발급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높이 등)	100.00	0.00	37.50	62.50
가-4. 시각장애인이 무인발급기 사용 시, 점자표시와 음성안내가 제공됩니다.	0.00	100.00	12.50	87.50
가-5. 무인발급기 사용 시, 사용방법이 별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	-	12.50	87.50
가-6. 안내대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합니다. (높이가 적당해야 하고 하단에 공간 확보 필요)	70.00	30.00	61.90	38.10

공연장의 매표소에 관한 결과이다. 전동휠체어의 사용제한은 없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의 제한은 8.70%로 나타났다.

박물관/미술관과 마찬가지로 2019년에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곳이었으나 코로나 시대 이후로 많은 곳에 무인발급기가 생겨났고, 티켓 발급이 인터넷 예매로만 가능한 곳도 있었다. 무인발급기는 62.50%가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 하였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와 음성 안내가 되지 않는 곳이 각 87.50%로 나타났다. 안내대에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 38.10%로 조사되었다.



턱(단차)이 있고, 휠체어 이용자를 접근이 어려운 공연장 매표소

나. 편의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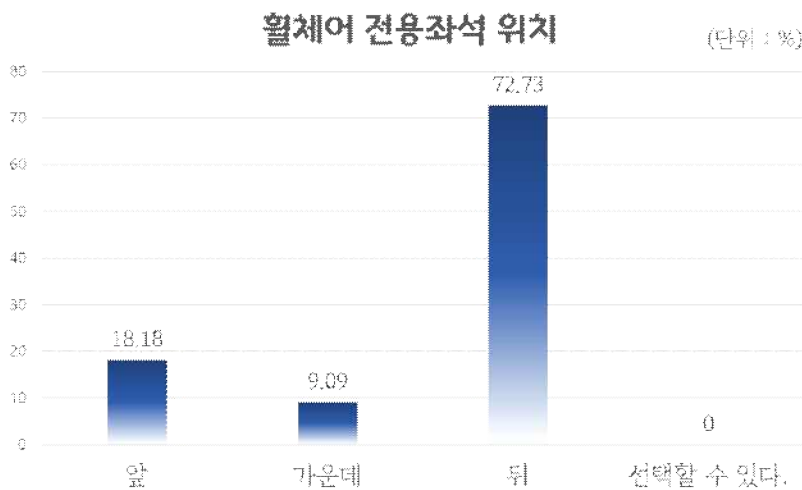
(단위:%)

문항	2109년		2023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나-1. 확대경(돋보기)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34.62	65.38	8.70	91.30
나-2.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15.38	84.62	4.35	95.65
나-3. 공연 관람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이 제공됩니다.	11.54	88.46	22.73	77.27
나-4. 공연 관람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및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11.54	88.46	4.35	95.65
나-5. 공연관람을 위한 FM 보청기가 제공됩니다.	26.92	73.08	4.35	95.65
나-6. 공연장 이용 시 장애인 안내를 위한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69.23	30.77	60.87	39.13
나-7. 공연장 내에 점자유도블록이 있습니다.	46.15	53.85	21.74	78.26
나-8. 휠체어 사용자가 공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96.15	3.85	95.65	4.35
나-9. 공연장 내부에 휠체어 전용 좌석이 있습니다.	88.00	12.00	86.96	13.04
나-9-1. 휠체어 전용 좌석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①앞쪽 ②가운데쪽 ③뒤쪽 ④선택할 수 있다)	<그래프 공연장-나-1> 참조			
나-9-2. 휠체어 전용 좌석에서 무대가 잘 보입니다.	95.65	4.35	89.47	10.53
나-9-3. 휠체어 전용 좌석은 몇 석이 있나요?	3~10석 / 평균 7석			
나-10. 휠체어 사용자가 공연장 내 부대시설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휴게공간 포함)	73.08	26.92	78.26	21.74
나-11. 휠체어 사용자의 무대 접근이 가능합니다. (직접 공연을 하는 등 필요한 경우 사용가능 여부)	57.69	42.31	60.87	39.13
나-12. 공연장 관람 시 불편한 점을 모두 적어주세요.				
나-12 답변. 휠체어석에서 무대가 너무 멀다, 리프트를 이용해야 좌석/무대에 갈 수 있다, 휠체어석이 없고 휠체어를 이용해서는 공연장까지 갈 수가 없다, 휠체어석으로 가는 통로가 좁아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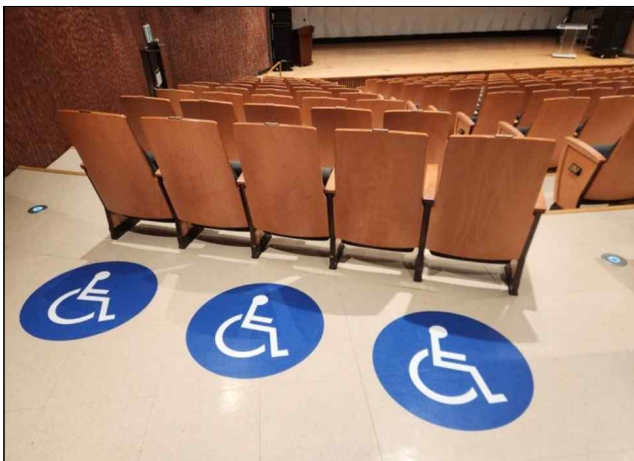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장애인 편의 제공은 4.35%~95.65%로 그 형태에 따라 수치 폭이 크게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을 위해 자료를 사전에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7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이나 문자통역, 수어통역, FM보청기 같은 편의는 4.35%~22.73%로 조사되어 2019년과 별 다름없이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 공연 관람이 자유롭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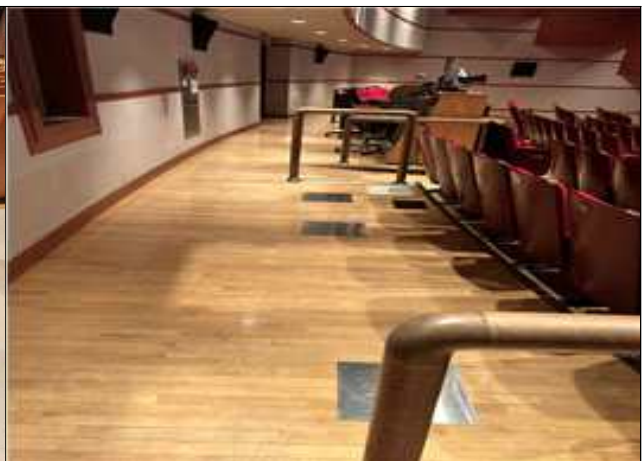
<그래프 공연장-나-1> 공연장 편의제공 조사 문항 나-9-1의 결과



공연장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무대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앞 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 및 피난통로가 무대 기준으로 제일 뒷 줄로만 접근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휠체어 전용좌석이 뒤쪽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 공연 관람 시 무대가 잘 보이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전용좌석의 별도 구분없이 맨 뒷 통로에 스티커로 표시한 공연장



장애인전용좌석이 가장 뒤편에 위치하여 무대가 잘 보이지 않는 공연장

4. 문화원

(단위:%)

문항	2019년		2023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1. 안내데스크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합니다. (높이가 적당해야 하고 하단에 공간확보 필요)	22.22	77.78	60.00	40.00
2. 문화원 내에 모든 공간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실, 휴게공간 등 포함)	66.67	33.33	60.00	40.00
3. 확대경(돋보기)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30.00	70.00	20.00	80.00
4.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0.00	100.00	0.00	100.00
5.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0.00	100.00	0.00	100.00
6.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0.00	100.00	0.00	100.00
7. 장애인이 원하면 모든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44.44	55.56	40.00	60.00
8.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00	90.00	0.00	100.00
8-1.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8-1. 답변.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없음.				
9. 프로그램 참여시 요청할 경우 보조 인력을 제공합니다.	40.00	60.00	50.00	50.00
10. 현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몇 명인가요?	전체 30명 (평균 3명)			
11. 전체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전체 181개 (평균 18.1개)			
12. 현재 문화원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모두 몇 명인가요? (직원에게 문의)	전체 2,101명 (평균 210.1명)			

문화원을 조사한 결과이다.

2019년 조사 결과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제공에 대해 가장 취약한 곳은 문화원으로 조사되었으며 휠체어를 이용하면 건물 내로 출입이 불가능한 곳이 경기북부 10개 기관 중 1곳으로 조사되었다.

이용하는 장애인이 없다는 기관도 다수로 나타났으며 문화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기관별 10명~750명으로 총 이용인 수는 2,101명으로 조사되었지만 장애인 이용인 수는 기관별 0~10명으로 총 10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30명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2019년 조사 때에는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총 10개 문화원 중 1곳(서예,풍수)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마저도 없어진 상황이다.

5. 소결

박물관과 미술관의 외관에 치우친 조경으로 인해 휠체어 이동 불가, 시청각장애인이 누리기엔 어려움이 있는 공연, 창고로 이용 중인 장애인용 화장실,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야 하나 장애인에게 문턱 높은 문화원 등 여전히 장애인에게 문화생활의 여가를 즐기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다만, 일부에서는 지난 2019년에 시행한 모니터링 이후, 장애인용 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율 증가, 축지도 설치율 증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율 증가 등과 같이 느리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 볼 수 있기도 하였지만, 결론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계법령에 의한 의무 사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는 행위로서, 사회의 평등을 통하여 통합을 이루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평등한 문화를 누릴 권리를 갖는 장애인 관람객 또는 장애인 예술인을 위해 문화복지서비스의 환경을 구축하고 관람시스템의 개발, 장애인 편의시설구축,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VI. 실태조사 모니터링의 문제점 및 한계

이번 공공문화시설 실태조사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등에 규정하고 있는 바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휠체어를 사용하는 조사원이 해당 시설의 주 출입구에서 경사로 등이 구비 되지 않아, 진입 자세를 할 수가 없어 별도의 공간에서 담당자와의 설문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곳이 있는가 하면, 사전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당시설에서는 관리 담당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면밀하게 조사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체크리스트의 일부 문항이 조사자에게 혼선을 야기하여 결과 재 문의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했던 점은 사전 준비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했다고 본다.

VII. 전망과 과제

공공문화시설 실태조사는 그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편의증진을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장애인들이 문화·여가생활을 향유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장애인의 문화·여가 생활은 기본적 권리임과 동시에, 자신감 및 자아 존중감 향상, 행복지수 증가, 스트레스 해소, 정서적 활동 증진의 연결이며, 사회성·대인관계 확대 등의 생활환경 변화의 의미를 가져다 준다.

전국에서 공공의 영역이 운영중인 문화시설은 1,128개소³⁾이며, 경기도 내에는 252곳이며, 이중 경기 북부지역은 전국 대비 7.18%인 81곳(경기도 전체 대비 32.14%)이 설치 되어 있다.

이 중에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⁴⁾ 보고서에 따라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불만족 응답자 51.1%, 집 밖 활동 시 불편함을 느낀 응답자 49.0%, 불편함을 느끼는 주된 이유가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40.8%가 답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위 시설 중 절반 이상은 이용에 불편을 보일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실제 발생 되는 공공문화시설 이용의 불편함은 경기북부 장애인의 기본권리 자체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당연한 권리의 실현으로서 지자체를 비롯해 지역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그리하여,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그냥 보고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경기북부내 공공문화시설의 편의 시설 실태를 실질적으로 공유하고, 직접적인 교육과 개선사항들에 대한 개선촉구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9년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생활SOC⁵⁾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종래 SOC가 도로·철도·항만 등 생산(경제)의 기반 시설을 의미했었다면, 생활SOC는 문화·체육·보육 등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인 안전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약 33조원(지방비 포함시 48조원)에 해당하는 국비를 투자하였다. 이중 문화와 관련해서는 도서관은 136개소, 생활문화센터는 233개소를 추가 확충하는 등의 사업추진을 통해 대부분의 문화시설이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10분내(약 9.4분)에 1개소 이상의 시설이 접근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와 관련한 시설의 확충은 국민의 문화여가생활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있는 계획이다. 하지만, 설립을 위한 계획 수립의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을 비롯하여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면, 결국 의미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기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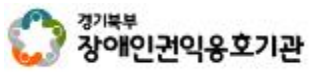
참고로 경기도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시설 가운데 지난해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2,109개소와 2015년 7월 이후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받은 785개소에 대해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시설의 확충도 필요한 것이 맞지만 그것이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설로 갖추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공공문화시설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시설로 탈바꿈되어,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

3) KOSIS 국가통계포털_공공문화체육시설_문화시설 (2005~2022)

4)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 정부 2019.04.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법률 제18334호, 2021. 7. 27.,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1.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p> <p>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1., 2009. 5. 22., 2010. 5. 11., 2011. 3. 29., 2011. 6. 7., 2013. 3. 23., 2016. 2. 3., 2017. 9. 19.,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p>[대통령령 제33367호, 2023. 3. 30., 일부개정]</p> <p>제2조(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후단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8. 21., 2013. 3. 23., 2017. 7. 26., 2020. 12.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이 승·하차하거나 스스로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장착한 자동차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능정보제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p> <p>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p> <p>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p> <p>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p> <p>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p> <p>가. "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p> <p>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p> <p>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p>	<p>제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p>제4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5. 19., 2016. 2.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4.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p>9. "정보통신"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p> <p>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p> <p>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p> <p>12. "관광활동"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p> <p>13.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p> <p>14.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p> <p>15.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p> <p>16.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p> <p>17.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p> <p>18.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p> <p>19.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20.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p> <p>21.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p> <p>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p> <p>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p> <p>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p>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p> <p>제5조(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7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p> <p>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p> <p>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p> <p>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제8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시설·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2. 교육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3.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4. 공공기관 등의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과 참정권 행사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5. 모·부성권 및 성(性)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6.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7.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실태 8. 그 밖에 법의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차별금지</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고용</p> <p>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p> <p>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p>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조사 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장애인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p> <p>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p>제6조(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 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 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7조(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 ① 사용자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때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에 드는 비용의 명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사용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작업일정 변경 등을 통하여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p>
<p>제2절 교육</p>	
<p>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p> <p>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p> <p>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공하여야 한다.</p> <p>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 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1.></p> <p>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 	<p>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신설 2018. 6.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음성변환용 코드 2.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p>②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 수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p> <p>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p> <p>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p> <p>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p> <p>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① 교육책임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독립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p>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p> <p>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p> <p>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p>	<p>제10조의2(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p> <p>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는</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p> <p>④ 제3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상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p> <p>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상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상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상당한 편의의 제공을 상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상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 2. 무인정보단말기 전면(前面) 및 하부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발판과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또는 별도의 공간 확보 없이도 무인정보단말기 화면 내의 시각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3.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다른 바닥과 구분되는 재질의 바닥재 설치 4. 무인정보단말기 전면(前面)에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5. 무인정보단말기의 오류 발생 등 이용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수어·문자·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6.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라는 것과 그 이용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 게시 또는 전자적 신호 제공 <p>③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제2항 각 호의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p> <p>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p> <p>제12조(시설물 관련 상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상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1.></p> <p>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p> <p>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이동·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 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2. 11. 27.></p> <p>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2. 11. 27.></p> <p>③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p> <p>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3., 2017. 9. 19.></p> <p>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p> <p>③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1. 7. 27.></p>	<p>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행위자 등(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행위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8. 2., 2023. 3. 30.></p> <p>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 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p>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21조제2항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3. 30.></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④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6. 2. 3., 2021. 7. 27.></p> <p>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3. 3. 23., 2017. 7. 26., 2021. 7. 27.></p> <p>⑥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 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1., 2014. 1. 28., 2017. 12. 19., 2021. 7. 27., 2021. 12. 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p>⑦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5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11., 2013. 8. 13., 2021. 7. 27.> [제목개정 2010. 5.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2. 그 밖의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p>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3. 3. 30.></p> <p>⑥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행위자 등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3.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 2. 장애인이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매·설치하기 전에 제1호의 검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제공 3. 장애 유형에 따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설치·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수어·문자·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5. 응용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음성명령 기능의 지원 <p>⑦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6. 8. 2., 2023. 3. 30.></p> <p>⑧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시청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5. 19., 2016. 8. 2., 2023. 3.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3. 29.></p> <p>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p>	<p>⑨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3. 3. 23., 2017. 7. 26., 2023. 3. 30.></p> <p>⑩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3과 같다. <신설 2011. 5. 19., 2023. 3. 30.></p> <p>⑪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나 한국수어 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한국수어 영상 등으로 변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로 한다. <신설 2011. 5. 19., 2016. 8. 2., 2023. 3. 30.></p>
<p>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p> <p>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7. 9. 19.]</p> <p>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접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p>제15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p> <p>②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2.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p>[본조신설 2018. 3. 27.]</p> <p>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p> <p>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p> <p>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p> <p>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p> <p>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p> <p>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p> <p>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p> <p>②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p> <p>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p>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p> <p>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2. 10. 22.></p> <p>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절 모·부성권, 성 등</p> <p>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p> <p>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p> <p>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p> <p>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p> <p>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p> <p>①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의 자유 (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p> <p>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p> <p>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p> <p>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p>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p>제18조(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이 규정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 12. 8.></p> <p>제19조(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여성 근로자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2. 직장어린이집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데에 위험이 없도록 장애물 제거 3. 소속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책자 비치 4.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자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5.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 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p> <p>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p> <p>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p> <p>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p> <p>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1조(준용규정)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②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p> <p>제43조(시정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p>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p>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하여 위원회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p> <p>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p>	<p>제20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의 성명·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p>제21조(시정명령 기간) 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권고 불이행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p> <p>제22조(시정명령 서면)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정명령의 이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⑥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p> <p>제43조의2(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차별행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 진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p> <p>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p> <p>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p> <p>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p> <p>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p> <p>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p> <p>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p> <p>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p> <p>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칙</p> <p>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p>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1.></p> <p>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 5. 11.></p> <p>③ 삭제 <2010. 5. 11.></p> <p>④ 삭제 <2010. 5. 11.></p> <p>⑤ 삭제 <2010. 5. 11.></p>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

행위자 등	단계적 범위
1. 공공기관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교육기관	○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3. 교육책임자	○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4.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그 외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5. 문화·예술사업자	○ 별표 4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6. 의료인 등	○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7. 의료기관 등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관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8. 체육 관련 행위자	○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9.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0. 시설물 관련 행위자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1.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을 적용함
1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 별표 1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1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관계자	○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3. 30.>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

1.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 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대학박물관
 -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국·공립 대학미술관
2.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사립 대학박물관, 사립 대학미술관
3.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일반공연장
 - 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 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조각공원, 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미술관 중 사립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2023. 6. 29.] [법률 제1930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의 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전문개정 2015. 1. 28.]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6조의2(편의증진의 날) ①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28.]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전문개정 2015. 1. 28.]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15. 1. 28.]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들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9조에서 이동 <2015. 1. 28.>]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1. 6. 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 [본조신설 2015. 1. 28.]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10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19. 12. 3.>]

제10조의6(인증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

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5. 1. 28.]

[제1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6은 제10조의7로 이동 <2019. 12. 3.>]

제10조의7(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3.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10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7은 제10조의8로 이동 <2019. 12. 3.>]

제10조의8(청문)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5. 1. 28.]

[제10조의7에서 이동 <2019. 12. 3.>]

제10조의9(인증 통계의 작성·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의 활성화 및 제10조의5에 따른 사후 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① 국가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인증기관 관리·지원
2. 인증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3. 인증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10조의11(인증 수수료) ① 시설주는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예비인증 신청,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하 “인증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수료 납부의 방법·기간, 수수료 감면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공표의 범위·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15. 1. 28.]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2. 대상시설의 건축·대수선(大修繕)·용도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
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에 따른 편의증진심의회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3.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③심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 12. 31.]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14조의2(교육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시설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승인할 때에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전문개정 2015. 1. 28.]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15. 1. 28.]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③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18조 삭제 <2003. 12. 31.>

제19조 삭제 <2003. 12. 31.>

제20조 삭제 <2003. 12. 31.>

제21조 삭제 <2003. 12. 31.>

제22조(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된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3조(시정명령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15. 1. 28.]

제24조(이행강제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의 금액
2. 부과 사유
3. 납부기한
4. 수납기관
5. 이의 제기 방법
6. 이의 제기 기관

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시설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전문개정 2015. 1. 28.]

[제28조에서 이동 <2015. 1. 28.>]

제25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 5. 23.]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2. 3., 2019. 12. 3., 2021. 6. 8., 2021. 7. 27.>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8조

[종전 제28조는 제24조로 이동 <2015. 1. 28.>]

제29조

[종전 제29조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5. 1. 28.>]

부칙 <제19302호, 2023. 3. 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4. 27.>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 삭제 <2006.1.19>
2. 공 원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 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 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p>(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p>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p>(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p> <p>(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p>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p>(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p>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p>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p>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p>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p>	<p>(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p> <p>(나) (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p>	<p>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p>	<p>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p>	<p>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10) 점자블록</p>	<p>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p>
<p>(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p>	<p>(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삭제 <2007.2.12></p> <p>(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p>

<p>(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p>	<p>(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장애인들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13)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p>	<p>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관광숙박시설은 3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p>
<p>(14)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p>	<p>(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p> <p>(나)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p>
<p>(15)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p>	<p>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들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p>
<p>(16)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p>	<p>매표소(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p>
<p>(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 시설 등</p>	<p>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p>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 · 침실	관람석 · 열람석	접수대 · 작업대	대표소 · 판매기 ·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 시설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수퍼마켓 ·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 · 미용원 · 목욕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휴게음식점 · 제과점 등 음료 · 차 · 음식 · 빵 · 떡 ·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대피소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공중화장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산후조리원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1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지역아동센터(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일반음식점(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일반음식점(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공연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안마시술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집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전시장, 동·식물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종교 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하며,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판매 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료 시설	병원 · 격리병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교육 연구 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유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교육원 · 직업훈련소 · 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노유자 시설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 아동복지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수련 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운동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업무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숙박 시설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관광숙박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공 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운전학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방송 통신 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교정 시설	교도소·구치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관광 휴게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휴게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장례식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 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p>(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p>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p>(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용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p> <p>(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p>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p>(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p>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p>(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p>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p>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p>

<p>(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p>	<p>아파트는 장애인들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p>	<p>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p>
<p>(8) 점자블록</p>	<p>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p>
<p>(9)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p>	<p>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p>
<p>(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p>	<p>(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및 (3)부터 (7)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나) 「주택법」 제2조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p>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아파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연립주택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다세대주택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기숙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기숙사가 2동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장애인용 침실이 설치된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용 침실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 침실의 경우 출입구(문)는 권장 사항임	

5. 삭제 <2006.1.19>

6. 통신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 기준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p>(1)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 소음도가 7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머리뼈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등을 설치할 수 있다.</p>
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p>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1. 11. 3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
(제5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시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안마시술소
3.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4.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5.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6.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7.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8.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9.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11.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12.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13.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14.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16. 교정 시설	보호감호소·교도소·구치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1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18.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휴게소
19.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비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이 지형, 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1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등

-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경 계

-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라. 재질과 마감

-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3) 장애인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행장애물

-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2. 삭제 <2007.3.9>

3. 삭제 <2007.3.9>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

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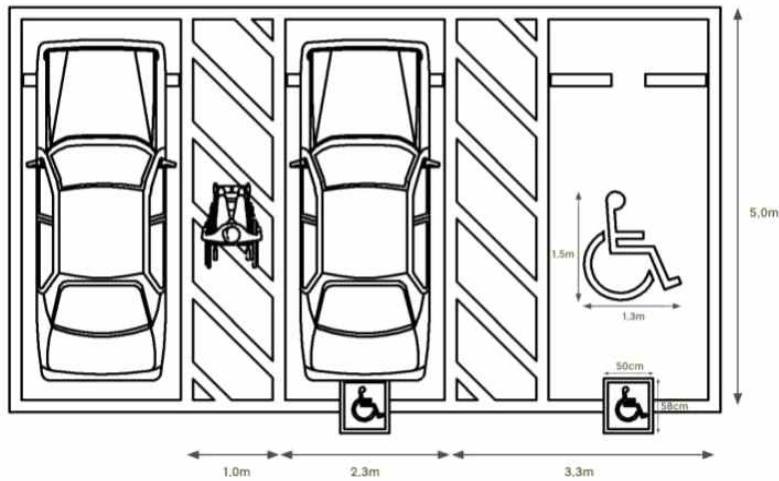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주차공간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가)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
 - (나)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는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번호)○○○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지역번호)○○○ -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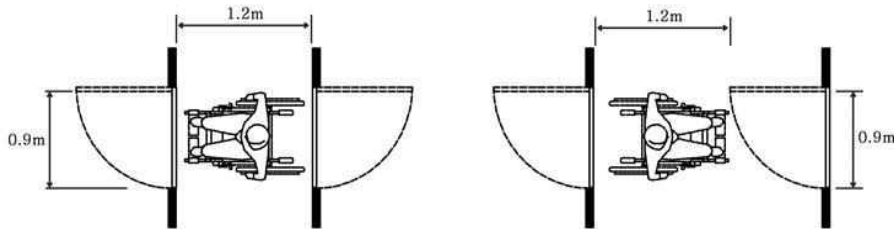
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6.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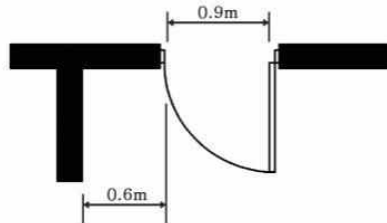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출입구(문) 중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 (3)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4)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문의 형태

-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서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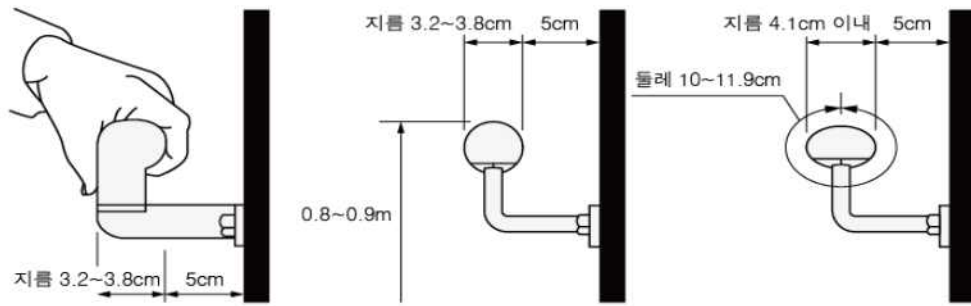
나. 바닥

-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3) 삭제 <2007.3.9>

다.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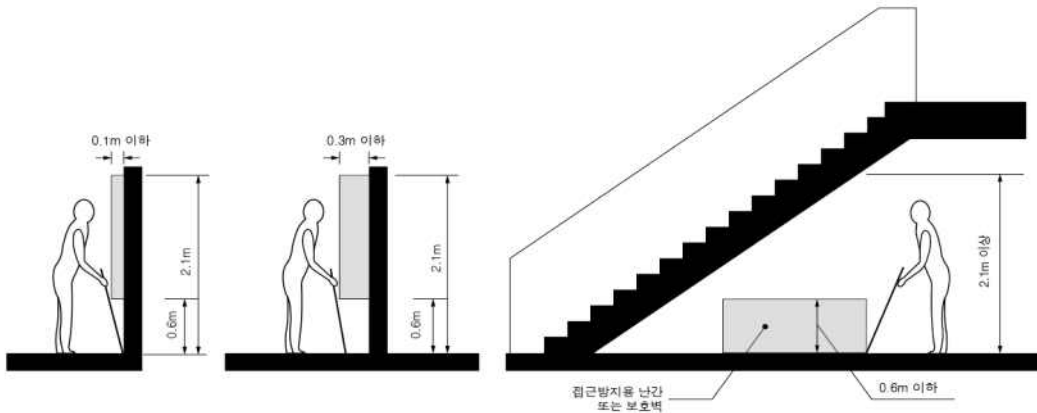
-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타원형 손잡이의 경우에는 손잡이의 긴지름을 4.1센티미터 이하로, 둘레를 10센티미터 이상 11.9센티미터 이하로 해야 하며 손잡이의 상단부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쉽게 잡을 수 있는 형태로 해야 한다.
- (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라. 보행장애물

- (1)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 폭은 0.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2)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해야 한다.



마. 안전성 확보

- (1)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 (2)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

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계단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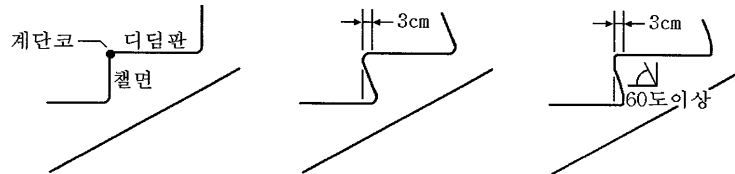
-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디딤판과 철평면

- (1) 계단에는 철탈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2)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철탈면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철탈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 (3)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철탈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1)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마. 재질과 마감

- (1)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 (2)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바. 기타 설비

- (1)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 (2)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

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며,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가. 유효폭 및 속도

- (1)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

- (1)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 이상 수평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2)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다.

다. 손잡이

- (1)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3)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휠체어리프트

가. 일반사항

- (1)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1.4미터×1.4미터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 (2)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 (3) 운행중 돌발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2) 운행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3)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미터 이상, 깊이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나. 기울기

-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다.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재질과 마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마.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가)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 출입구(문) 중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

한 화장실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다)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나)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화장실 중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화장실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2.0미터 이상, 깊이 2.1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고,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미터 이상 ×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마)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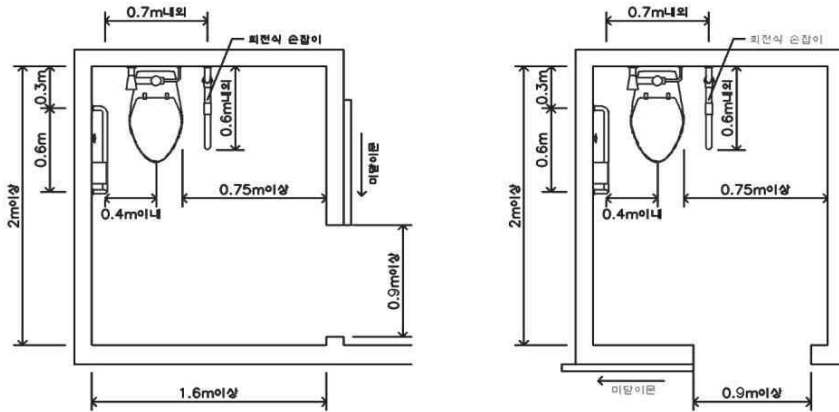
(2) 구 조

- (가)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 (나)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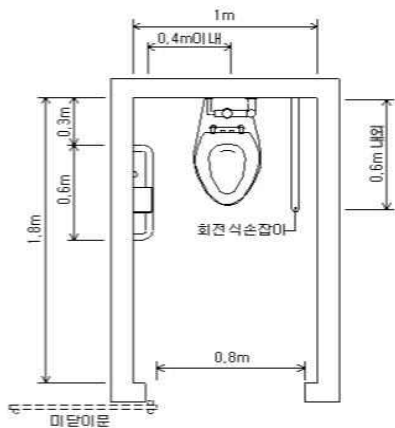
(3) 손잡이

-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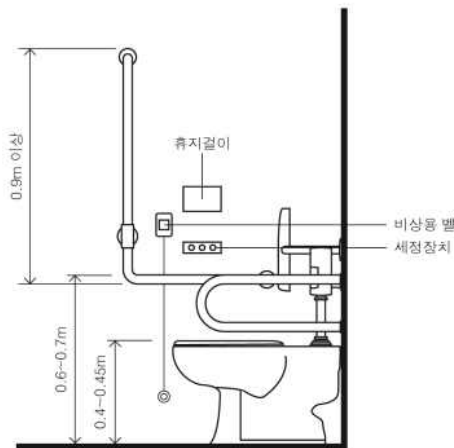
-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신축건물)>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4) 기타 설비

- (가)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다)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라)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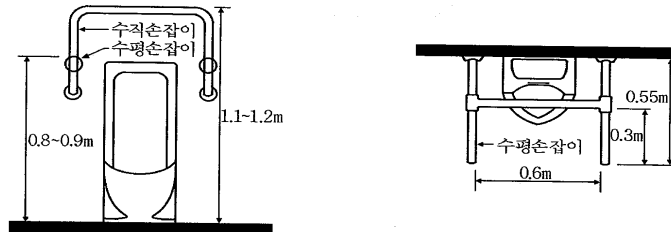
다. 소변기

(1) 구 조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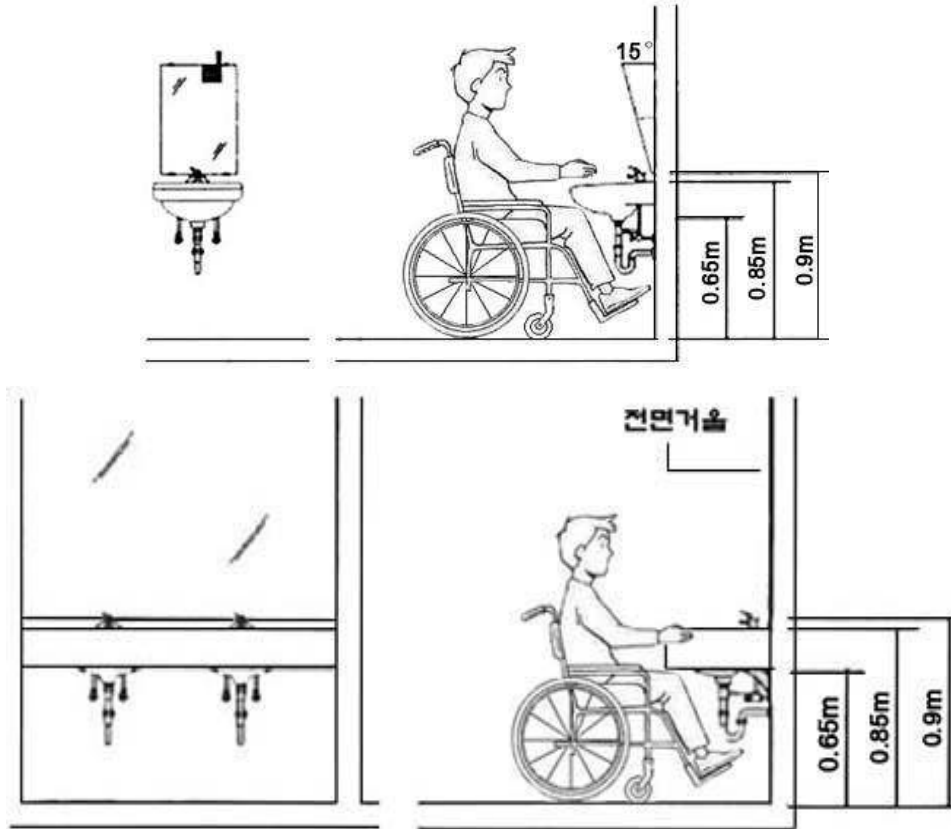
라. 세면대

(1) 구 조

- (가)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 (가)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나)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다)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14.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가. 설치장소

욕실은 장애인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 (2)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 (1) 욕실의 바닥면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 (2)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3)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욕조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 (4)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가. 설치장소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 (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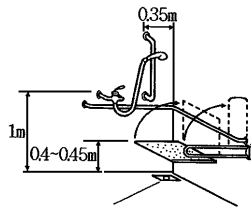
- (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샤워실에는 장애인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샤워실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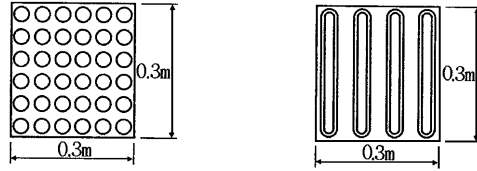
- (4)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점자블록

가. 규격 및 색상

-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점형블록

선형블록

- (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설치방법

-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 (3)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해볼 때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 (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나. 음성안내장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다. 기타 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8.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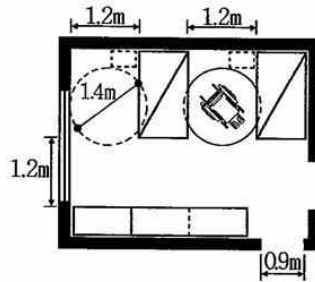
19.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가. 설치장소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구조

-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 (2)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고,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바닥

- (1)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 (1) 객실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2) 객실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3호가목(2)(가)·(3)(나), 나목(1)부터 (3)까지·(4)(가), 라목 및 제1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3)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객실등에는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 설치장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의 구조

-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좌석 또는 접이식 좌석을 사용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이동식 좌석의 경우 한 개씩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아닌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3)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5) 영화관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좌석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관람에 불편하지 않은 충분한 거리일 경우에는 스크린 기준으로 제일 앞 줄에 설치할 수 있다.
- (6) 공연장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무대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앞 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 및 피난통로가 무대 기준으로 제일 뒷 줄로만 접근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할 수 있다.
- (7)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열람석의 구조

- (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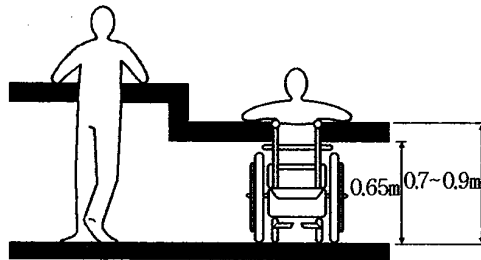
2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가. 활동공간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 조

- (1)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가. 활동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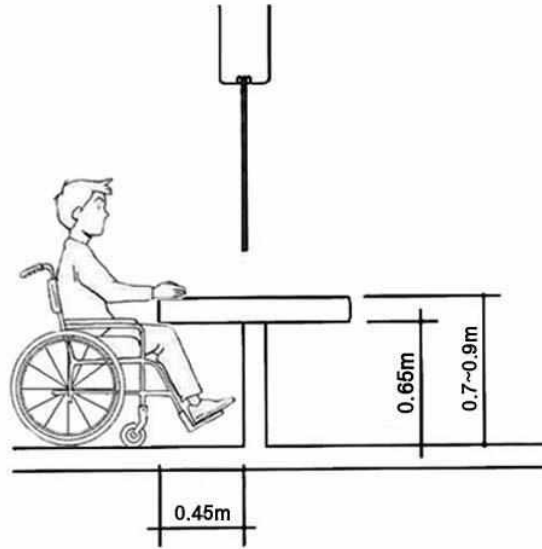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 조

- (1)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

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3)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기타 설비

- (1)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2)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3. 삭제 <2007.3.9>

24. 삭제 <2007.3.9>

25. 삭제 <2007.3.9>

26. 삭제 <2007.3.9>

2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가. 설치장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3)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2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가. 설치장소

공중전화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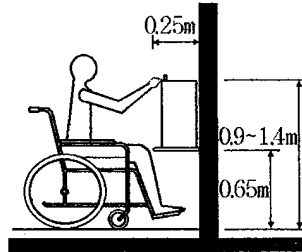
- (1)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2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동전 또는 전화카드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4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지팡이 및 목발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할 수 있다.

2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가. 설치장소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우체통투입구의 높이는 0.9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비 고 : 위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항목 중 " · ·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사항은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권장사항임

2023년 경기북부 공공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보고서

2023. 12.

